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
제안연월일 : 2018년 12월 일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**제5조(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)**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5조제2항 "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,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·법률·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" 는 규정을 삭제 (안 제5조제2항)

나. 제5조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동 (안 제5조제3항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,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·법률·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5조(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